〈 창업희망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 >

1. 본 서류는 '대외 공개용 정보공개서'로서, 정보공개서 원본에 서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모두 비공 개 처리하여, 대외 공개하기에 적합하도록 바꾼 것입니다.

원본을 확인하려는 경우 해당 가맹본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 <u>가맹계약을 체결</u>하시려는 경우, 반드시 가맹본부에게서 <u>본 서류</u>
<u>가 아닌 정보공개서 원본을</u> 받아 보고, <u>14일의 숙고기간 동안 그</u>
내용을 검토해 보신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원본을 제공하지 않거나, 14일의 숙고기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해당됩니다.

3. 본 서류의 내용은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거나, 비 공개 대상 항목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 다.

서 울 특 별 시 장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0876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7.07.28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4.02.13

www.myungrangclub.com

[명랑회관]

정보공개서

(주)명랑식품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주)명랑식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 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 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5-1번지]

[전화번호 : 1522-3992]

[팩스번호: 070-4758-8190]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가맹사업본부 02-565-2882]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П.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W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 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 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 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 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추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	.ㅈ]	주 소				
명랑회관 외 1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5-1학						-1번지	
(조)메라시표	법인 설립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					대표팩스번호
(주)명랑식품	2015.11	1.13	2015.11.30	강준모	152	22-3992	070-4758-8190
	법인등록번호	11011	1-5889005	사업자등록	번호	506	-81-9221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의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7) 7 17	서울특별/	시 강남구 대치동	895-1번지		
사용인 (대표이사)	강준모 (주)명랑식품	명랑회관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1 17	(1700 10		강준모	1522-3992	070-4758-8190	

3. 가맹본부의 인수, 합병 내역 : 해당없음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명랑회관]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명랑회관	
상 호	명랑회관 00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음.
그 밖의 영업표지	Figure 19 기관 Process Figure 19 November 19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부가세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1,188,347	913,908	274,438	1,648,138	-19,352	-43,638
2022년	1,110,123	810,836	299,287	1,921,661	57,269	24,848
2023년	1,447,555	902,010	545,545	1,918,281	-42,135	246,258

2) 당사는 브랜드별 매출액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삼미대포, 명랑회관의 가맹사업 매출액은 위 1)의 매출액과 같습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관련여부 이름			사업경력	
선인역구	기급	현 직위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 임원	강준모	대표이사	2015.11.09 ~ 현재	(주)명랑식품 대표이사	회사 업무 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J Z-l	임원-	수(명)	对이人(时)
시점	상근	비상근	직원수(명)
2023년 12월 31일	1	_	131)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¹⁾ 명랑회관,삼미대포 직영점 직원 합산

관계	상호/이름	구분	기간	사업내용
가맹본부	(주)명랑식품	가맹사업 경영	2019.10.~현재	삼미대포(등록번호: 20190901)이라는 영업표지의 기타외식 경영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प्रकृतिक स्वास्त्र के स्वास्त्			30-2017-0036050		
* "少子" * 明朗會館	해당디자인을 가맹점운영권 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7.08.03	30-2017-0036051	강준모	2037.08.03
人生 內家 인생육가	1 U		30-2017-0036052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田. 가맹본부의 [명랑회관] 가맹사업 현황

1. [명랑회관]을 시작한 날: 2016년 10월 14일

(직영점을 시작한 날: 2015년 12월 15일)

2. [명랑회관]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명랑식품	명랑회관	강준모	2016.10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5-1번지

3. [명랑회관] 업종

영업표지	업종				
rd 구노중) 고노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명랑회관	기타외식	돼지고기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명랑회관]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 개)

지역	2	2021.12.3	1.	2	2022.12.3	1.	2	2023.12.3	1.
시역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4	3	1	3	2	1	2	1	1
서울	3	2	1	2	1	1	2	1	1
부산	_	-	_	_	-	_	_	-	_
대구	_	_	-	-	_	_	-	_	_
인천	-	-	-	-	-	_	-	-	_
광주	_	-	_	_	-	_	_	-	_
대전	_	_	-	-	_	_	-	_	_
울산	-	-	-	-	-	_	-	-	_
세종	_	_	-	-	_	_	-	_	_
경기	_	_	-	-	_	_	-	_	_
강원	_	_	-	_	_	_	-	_	_
충북	_	_	-	-	_	_	-	_	_
충남	_	_	_	_	_	_	_	_	
전북	_	_	_	_	_	_	-	_	_
전남	1	1	-	1	1	_	_	_	_

경북	_	-	-	-	_	-	_	-	_
경남	-	_	_	_	_	_	-	_	_
제주	-	_	_	_	_	-	-	_	_

5. 바로 전 3년간 [명랑회관] 가맹점 수

(단위: 개)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3	_	_	_	_	3
2022	3	_	1	_	_	2
2023	2	_		1	_	1

[명랑회관] 가맹점의 자세한 내역은 별지를 확인하십시오.

6. [명랑회관]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명랑회관]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개)

그ㅂ	사동/이르	여어교기	정보공개서	어 조	가맹점/직영점의 수		
구분	상호/이름	영업표지	등록번호	업종	2021.12.31.	2022.12.31.	2023.12.31.
가맹본부	(주)명랑식품	삼미대포	20190901	갈비살	4/1	5/1	4/1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기역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비고	
	7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							생략함
서울	1							5곳 미만
부산	_							
대구	_							
인천	_							
광주	_							
대전	_							
울산	_							
세종	_							
경기	_							

강원	-				
충북 충남	_				
충남	_				
전북	_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_				

가맹점이 1곳뿐이어서 평균매출액 산정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매출액산정을 생략하 였습니다.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 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명랑회관]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3	1	2,670 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 · 판촉 지출 내역

당사에서 [2023년]에 [명랑회관, 삼미대포] 광고 및 판촉과 관련하여 지출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	용(단위: 천원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6,482	6,482	_	
광고	비공개	비공개	6,482	6,482	-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하나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하나은행	강남금융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대치동)	02-3011-5139

자세한 예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가맹금을 예치하는 절차와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 목	내 용
필요서류	가맹금예치신청서 1부(별첨. 5)
(은행양식)	
	계좌가 하나은행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
준비서류	가맹점사업자의 타행계좌 사본 1부, 가맹점사업자 신분증 사본 1부,
	대리인 접수시 위임장 1부
	방법1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 가맹금예치신청서 접수 → 은행 영업점에서
이 0 HJH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수취 →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이용방법	방법2
(다음 중 택 1)	가맹본부가 하나에스크로 홈페이지에 가맹금예치신청서 내용 등록 →
	가맹점사업자의 휴대폰으로 가맹금입금용 에스크로계좌 문자로 발송 →
	휴대폰 문자로 받은 에스크로계좌에 가맹금 입금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예치가맹금의 예치가 가능합니다.

<u>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u>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

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하나은행과 가맹금예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 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 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Ⅳ.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명랑회관]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점포면적에 따라 상이
로열티	가맹본부	예치하지 않음	매출에 따라 상이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25,300]				
가입비	22,000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	반환되지 않음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용	개점전 가맹본부에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에만 일부 반환
교육비	3,300	계약 체결 후 즉시 지급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 및 보증보험의 경우 당사는 제3자 물류인 (주)삼립지에프에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보증금이 아닌 보증보험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
합계	25,300
가입비	22,000
교육비	3,300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99㎡)

구분	지급대상	급액	면적 3.3㎡당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6,300 ~ 103,150]	[3,210~ 3,438]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은 제외
내부공사		[42,000~ 45,000]	[1,400~ 1,500]	공사 시작 3일 전		
덕트시설	취검어비	[8,500~ 9,000]	[283~ 300]	계약금 30% / 덕트공사	공사 또는	실측 후
의탁자	협력업체	[5,500~ 6,000]	[183~ 200]	시작 전 40% / 간판	납품 전 계약 취소	
외부공사		실측 후 산정		시공 3일전 30%		
간판	지정협력업체	[4,300~ 4,500]	[143~ 150]	설치 1일전		1면당
주방집기	협력업체	[9,000~ 10,000]	[300~ 333]	납품 1일전	납품 또는 발주 전	
주방기기	합격납세	[9,000~ 10,000]	[300~ 333]	납품 1일전	월두 전 계약 취소	
주방설비	협력업체	[3,000~ 3,150]	[100~ 105]	공사 시행 3일전		
집진기	협력업체	[10,000 ~ 10,500]	[333~ 350]	납품 1일전		
본사 납품 상품	가맹본부	1,500 (확정금액)	500	납품 1일전		초도 식자재
POS 및 음향 시스템	협력업체	1,500 (확정금액)	500	오픈 1일전	발주 전 계약 취소	사양에 따라 변동
판촉 홍보물	가맹본부	2,000 (확정금액)	67	오픈 1일전	발주 전 계약 취소	
기타 공사	협력업체	실측 후 산정				면적에 따라 상이
별도 금액	자체조달 및 가맹본부 외	집진기, 전	, 전면접이문 포외부공사, , 어닝, 전기 - 초도물	기본 1면외 증설, 냉/난병	추가 간판,	매장상황 및 점주선택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금액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귀하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직접 설치/구매할 수 있으나 당사의 관리 및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합니다. 이에 귀하는 이의 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99m² < 약30평 >이하 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비고
수도권(서울/경기지역)	6,600	99㎡(약30평)초과시 3.3㎡(약1평)당
충청도 및 강원도(영서)지역	7,260	
전라도, 경상도 및 강원도(영동)지역	7,990	금이십이만원(₩220,000)<부가세포
제주도 지역	8,790	함>을 추가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필수 구입 내역: 주방 및 홀 집기, 초벌기, 테이블, POS일체, 초도물품 등은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 및 당사의 지정업체에서 구입하여야 합니다. 다만부득이한 경우 주방 및 홀 집기, 초벌기, 테이블의 경우에 한해 당사의 승인을 얻어 귀하가 직접 구입할 수 있으나, 귀하는 당사가 정한 모델 및 동일한 규격, 사양으로 당사의 품질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또한, 브랜드 로고가 인쇄되어야하는 물품을 직접 구매할 경우, 당사가 제공하는 브랜드 로고를 받아 사용하여야하며, 제작 완료 후에도 당사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시 가맹점 영업활동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영업신고 및 교육, 사업자 등록 발급, 전화 개설, 인터넷, TV수신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자체 부담하여야 합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다사 가메사었보브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 분석 → 최적의 입지 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 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 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귀하에게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입지에 대한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점포 선정에 따른 모든 책임은 가맹희망자에게 있으며, 당사가 점포개발을 대행하는 등 여타의 경우라 할지라도 입지 선정시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또한, 점포의 하자 및 권리의 하자 등의 사유로 당사에 책임을 전가할수 없습니다. 한편, 입지 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ㆍ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의 경영마인드 부합 시	금치산자·한정치산자가 아닐 것 건강진단증 소지 또는 발급 가능자일 것
종업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이 아닐 것	만20세 이상, 건강진단증 소지 또는 발급 가능자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명랑회관]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상기 내역은 매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귀하의 점포 실 측 후 계약체결시 별도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상표사용료(로열티), 리스료, 광고료, 교육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리모델링 비용, 재고관리 및 회계처리 비용, 판매 시점 관리시스템(POS)을 포함한 운영시스템 유지비용 등 가맹점사업자가 해당 가맹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가맹본부 또는 그

관계자에게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대가의 내역과 그 반환 조건 및 반환될 수 없는 경우와 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참고하시기	은 (V-8-1)을 바랍니다.	반환 안됨	광고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가맹본부 분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자세한 내용	용은 (Ⅶ-1)을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개점 후 교육비	가맹본부	자세한 내용 참고하시기	은 (Ⅶ-1)을 바랍니다.	반환 안됨	교육 실시 이후에는 반환되지 않음	
포스	협력업체	30	포스업체와 별도 협의	반환 안됨	시스템 관리비로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가맹본부	월 매출의 1.5%	전월분 익월 5일 당사에 지급	반환 안됨	영업표지의 사용대가 및 가맹점 관리비용으로 반환되지 않음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0%	지급 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반환 안됨	당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시 부담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 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 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기준: 2023년)	내용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_
가맹점당 평균매출액 대비 평균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	-

당사는 제3자 물류 방식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가맹점 운영의 지원, 통제, 관리를 위한 점포상태를 점검시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점포를 방문하고 당사의 가맹점 관리기준에 위반하는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는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고 당사의 청구가 있으면 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자료(재고관리, 회계처리 관련 등)의 확인과 기록을 위하여 귀하는 당사의 직원이 점포에 출입하 여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 단, 가맹갱신요구 기간이 지난 뒤의 경우 예외)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부담하셔야 할 재가맹비는 없습니 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 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 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계약기간 중 귀하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사에 가맹비(1,100만원, 부가세포함), 교육비(330만원, 부가세포함)를 납입하고 당사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귀하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비(2,200만원, 부가세포함), 교육비(330만원, 부가세포함)를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에 '명랑회관'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즉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 (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를 삭제하여야 합니다. 또한 영업종료 후에 '명랑회관'의 이미지 및 상표, 표장, 디자인, 싸인물, 로고 등과 유사한 이미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귀하는 가맹점 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메뉴얼 등)를 즉시 반환 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귀하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귀하가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 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귀하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당사와 협의하여 반품할 수 있습니다.]

[본부 또는 본부 지정업체로부터 인테리어나 간판의 개선에 대해 지원 받은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지원 받은 경우 지원 받은지 3년 이내에 폐점이나 영업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명랑회관]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물품을 지정된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에게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 다른 품목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 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당사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V-3-3]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품 `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V-3-3의	메뉴명 외	계약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사와 귀하는 고객에게 동일한 영업 이미지로 브랜드 충성도 및 브랜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메뉴의 동질성 확보는 필수적인 부분으로, 귀하는 개점 전당사가 지정한 메뉴를 판매하여야 하고, 본사에서 지정한 레시피 또한 변경할 수없습니다. 지정된 메뉴를 판매하지 않거나, 지정된 메뉴 외 다른 메뉴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정당한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당사가 귀하에게 개점 지정한 메뉴 외에도 가맹사업의 개선, 고객니즈의 변화, 시 장상황, 경쟁업체의 출현 등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전체 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으로 기존 메뉴의 변경 또는 추가를 요구할 수 있 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도록 하고 있으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본 정보공개서의 내용에 따라 사업을 진행합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 · 용역의 판매 제한

귀하는 당사가 공급한 상품 및 원/부재료를 타 브랜드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기 타 자영업자 등 당사와 계약한 귀하의 점포가 아닌 다른 곳에 공급하는 등의 행 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인근 [명랑회관] 가맹점사업자의 물품 부족 비 상 시에는 당사의 승인을 얻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미성년자(청소년)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후	
고객	소스	기세된 세품는 판매할 수 없으며 배달판매 또한	미시정시 해약 가능(단, 시정요구에 따른 후에 동일	
고객	배달판매	메일펀메 또인 제한	위반행위 3회 이상 반복시 통보와 동시에 가맹해지)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관련업계 시장이나 소비자의 동향 그리고 다른 경쟁업체와의 경쟁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가격을 귀하에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당사가 정한 권장 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명품 숙성 삼겹살	15,000(160g)		
명품 숙성 목살	15,000(160g)		
진갈매기살	16,000(160g)		
진꽃갈비살	23,000(150g)	월별 홈페이지	
새송이버섯과 대파	3,000	공지 또는 당사의	
빠다밥	3,000	교육직원이	2019. 7월
생고기 김치찌개	6,000	귀하의 점포에	기준
된장찌개	6,000	방문하여 별도 공지	
공기밥	1,000	5↑	
물/비빔냉면	6,000		
4종 샘플러	17,000		

플래티넘 화이트 에일	7,000
플래티넘 골드 에일	7,000
플래티넘 IPA	7,000
대동강페일에일	8,000
제주위트에일	7,000
제주펠롱에일	7,000
소주	4,000
맥주	5,000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 ·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 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돈이할 어잘 뛰이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동일한 업종 범위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내산 숯불직화 돼지구이를 13,000원 이상으로 판매하는 30평 이상의 생고기 전문점	명랑회관	해당없음	

2) 영업지역 설정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특수상권일 경우	특수상권내	
특수상권이 아닐 경우	반경 400m 또는 인구 0.5만명 이상 (인구는 거주자와 근무자 그리고 이용자를 모두 합친 것을 인구라 한다. 다만, 특수상권은 제외함)	계약체결시 지도로 표시 (지도가 우선 효력 발생)

[특수상권이라 함은 백화점, 대형마트/쇼핑몰, 시장, 지하상가, 지하철역사 내 상가, 종합병원, 공항, 호텔, 먹자골목 등에 상응하는 별도의 독립상권]

[왕복 4차선 건너편 비보호(동일 브랜드 출점 가능)]

[특정 상권중 거리에 관계없이 상권의 독립성이 담보되는 대형 상권]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 대규모개발로 인하 급격한 변동이 발생 ② 해당 상권의 거주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하여 해당 상품·용 수요가 현저히 변동 ④ 위의 사유에 준히 인하여 영업지역·유지하는 것이 현재하다고 인정되는 경	지 건설 등여 상권의 하는 경우 인구 또는 동되는 경우 등으로 인용역에 대한 등되는 경우 그대로 위해 불합리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 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

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 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 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명랑회관]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자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음

5. 가맹본부의 온라인 ·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79 %	21 %	0 %	0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	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 · 연장 · 종료 · 해지 · 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명랑회관]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 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 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입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 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 지 않은 경우
○ [명랑회관]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 제1조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 제6조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 영업설비/집기 등의 설치 2) 물품의 조달과 관리 3) 거래상대방에 따른 물품판매의 제한
4) 메뉴판매의 제한 5) 가격결정의 제한 6) 영업시간 및 일수의 제한 7) 유니폼 착용 불이
행 8) 광고 및 판촉 성실이행 9) 경업금지 10) 상품공급의 중단 11) 로열티의 납입 12) 점
포환경개선에 대한 비용
○ 제7조제2항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 제8조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9조 "갑"의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 제14조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 제18조제2항 "을"의 요건 변동시 "갑"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
- "을"이 "갑"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 귀하가 고의 또는 과실로 당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 귀하가 계약체결일 또는 점포이전으로 인한 영업중단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도록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 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득시계약 해시 사ㅠ	계약조문
o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 우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정지된 경우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제31조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4항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 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 기 어려운 경우
-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확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 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교육비 지급)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당사 가맹사업본부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

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계약일 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 위탁하게 하거나 담보설정, 동업이나 전전세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V-6-2)의 표에 기재되 절차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한 후 당사의 승인을 받은 후 교육비를 당사에 지급하고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명랑회관]의 메뉴, 원/부재료, 운영시스템, 디자인 등은 당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 연구개발 노력 등을 투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된 영업비밀 또는 영업노하우로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동안 귀하 및 귀하가 제 3자로 하여금 동일한 업종을 운영하거나 가맹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아래와 같이 귀하가 당사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한기간	제한업종	제한지역
V-5-1) 가맹계약의 기간에 따른 기간	돼지고기를 숯불 직화구이로 판매하는 업종	국내 전 지역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명랑회관]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계약체결	시 협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개인 사정 등으로 영업을 불가피하게 중단하거나 영업시간을 조종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당사에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권장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권장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점주 자율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9. 광고 및 판촉 활동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당사는 [명랑회관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보다 저귀	ul ¬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분담 절차	비고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의 50%	광고비 50%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광고 계획 공고 → 가맹점의 광고참여 여부 결정(가맹점주 50% 이상 동의) → 가맹점부담액 제시(명세서)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이벤트 행사 (전국 행사)
	상품광고+ 가맹점모 집광고	광고비의 75%	광고비 25% 중 가맹점 총매출액 비율 따라 산정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부담	없음		
	개별광고	없음	전액 부담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판촉행사	전국 및 지역별 판촉	50%	50%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가맹점주 70% 이상 동의)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 70% 미만 찬성의 경우 비용부담에 동의한 가맹점만이 참석하는 판촉 행사가능
	기타 개별판촉	없음	전액 부담	가맹본부에 광고계획안 발송 → 당사의 브랜드통일성 여부 검토 → 10일 이내 승인여부 통지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 판촉 활동

[귀하가 자기의 비용으로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광고 및 판촉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하여 당사에 사전승인이 필요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 1) 귀하가 당사와 기간의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계약을 종료한 후 가맹계약서 제13조 1항 및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치사항(영업표지 사용중단 및 철거, 매뉴얼 등의 반환의무 등)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귀하는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 에 대하여 1일(10만원)의 지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2)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이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본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실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3) 당사 또는 귀하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 상대방에 게 [직전 3개월간(로열티+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공급업체와의 총 거래대금 의 30%)의 월 평균금액 × 10% × 잔여계약기간(월)]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4)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6조 제9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최초 가맹금과 위반일수에 따른 로열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5)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9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귀하 가 누설 및 유출할 경우, 귀하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따릅니다.
- 6) 귀하가 가맹계약서 제6조 제2항 제1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귀하는 당사에 위약벌로(5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7) 당사의 지급요청일에 귀하가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당사에게 지급기간 경과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귀하는 연 이율(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8) 귀하의 귀책사유 또는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1항 내지 제6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다른 계약내용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 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변호사보수 등)를 승소 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 9) 당사 또는 당사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의 경우에는 귀하는 당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가맹희망자 상담접수	- 전화, 홈페이지 문의, 방문	7일~14일 (변호사 및			
-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제공 사업 설명·상담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기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7일)			
가맹계약 체결	- 가맹금 예치 안내	2일	 IV. 가맹점사업자의		
점포실측 및 도면미팅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공사 착수	- 공사 실시	30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실시	- 메느 및 서비스 교유				
영업설비/집기 입고 -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 입고 - 식자재 등 입고		1일			
그랜드 오픈	- 영업 시작 - 판촉 및 홍보 이벤트 - 예치가맹금 수령	당일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기간이 늘어날 수 있는 사유의 예

- 점포선정이 늦어질 시
-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건물준공 등 인허가 사항이 늦어질 시
- 가맹점희망자/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의 협의 시
- 종업원 채용이 늦어질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

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귀하가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경우 정보공개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7일이 지난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 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ㅇ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지급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비용부담	ㅇ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

ᆀ이나	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제외사유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의 지원제도 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경영지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가맹점에 방문 → 경영 활성화를 위한 가맹점 개선사항 파악 → 개선사항 발생시 가맹점에 서면으로 해당 내용 안내	가맹본부 부담	문의:당사 가맹사업본부 전화:1522-3992
가맹점사업자 요청 시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방문일시, 소요비용 등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안내 → 가맹점 방문 → 경영지도	가맹점 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당사 가맹사업본부 전화:1522-3992

4. 신용 제공 등 내역

해당사항 없음

5.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 해당사항 없음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 · 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명랑회관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

2. 교육 · 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명랑회관]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14일(1일 8시간)	최초 가맹비에 포함 (330만원, 부가세 포함)	최초 계약시 이수
신메뉴 교육	메뉴에 따라 상이	실비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	내용에 따라 상이	실비	

3. 교육 · 훈련의 주체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ㆍ훈련 불참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당사가 귀하에게 제공하는 신규교육의 과정을 이수하지 않거나 귀하 및 귀하의 종업 원들의 습득 정도가 낮을 경우 재교육 또는 개점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의 신메뉴 개발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신메뉴 교육을 받고 해당 메

뉴를 고객에게 판매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교육을 받지 않거나, 메뉴를 판매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귀하 및 귀하의 종업원은 신메뉴 교육외 당사가 실시하는 정기 교육 및 부정기 교육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교육시 발생되는 실비용은 귀하의 부담을 원칙으로 합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서울	명랑회관 선릉점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85길 39, 1층 2호(대치동)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8 년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1,237,616	[당사의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직영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기재 한 것입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 우에는 당사 가맹사업본부(1522-3992)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 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http://myungrangcluib.com] 또는 **가맹사업정** 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	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오후)	٨	
수령장소							12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	개서를 수량	병했습니	다."라고	작성해주세요	-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명랑식품 주식회사 대표 강준모 (인)

정보공개서 수령확인서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	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3	5	ţ		
수령일시	년	월	일	(<mark>오</mark> 전	,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정보공	개서를 수	령했습니	다."라고	작성해주세요.

아울러, 정보공개서 내용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식재산권은 정보공개서를 작성한 가맹본부에 있으며, 기업의 영업비밀이 들어있어 무단 도용하거나 임의로 수정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명랑식품 주식회사 대표 강준모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본부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 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 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 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 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8
4			
5			
6			
7			
8			
9			
10			8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변	호			2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	J,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문서를 세요.	수령했습	습니다."라고	작성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명랑식품 주식회사 대표 강준모 (인)

지역 인근가맹점 현황문서(가맹점 보관용)

당사는 가맹사업법 제7조제2항[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할 경우에는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가맹점 10개(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의 상호, 소재지 및 전화번호가 적힌 문서(이하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서를제공할 때 장래 점포 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점포리스트를 제공합니다.

No.	상호	소재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수령확인서

▶ 아래 빈칸에 가맹희망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가맹희망자 성명	(인) 전화번호		
가맹희망자 주소			
수령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수령장소			
수령확인	아래 빈칸에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했습니다."라고 작성해주세요.		

201 년 월 일

가맹본부 명랑식품 주식회사 대표 강준모 (인)

[별첨] 재무현황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예치가맹금	₩	(금	원 정)
신청인의 계조	H		
가맹본부의 계좌	하나은행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의 5 제 1 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 조의 7 제 2 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면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1.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2.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 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3.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장